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. 6. 25 선고 2020가단3339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

담당변호사 김백근, 김종숙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임석

변 론 종 결 2021. 4. 30.

판 결 선 고 2021. 6. 2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. 4. 9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2. 피고는 소외 C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. 4. 9. 접수 제14947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(대표이사 C, 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와 사이에, 위 회사가 E조합(이하 ‘이 사건 E조합’이라 한다)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2. 5. 21. 보증금액을 200,000,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, 대표이사 C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.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E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지급의무를 해태하였고 2019. 11. 8.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E조합에게 2019. 11. 15. 203,311,249원을 대위변제하였다. 한편, 위 C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9. 4. 9.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라 한다), C은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므로,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한다.

2.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관련법리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. 다만,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6. 9. 2. 선고 2005다8286, 8293 판결 등 참조). 다만,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,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

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,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,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,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,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)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원고 주장의 신용보증계약 및 그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2019. 11. 8.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위 E조합에게 2019. 11. 15. 203,311,249원을 대위변제하여 소외 회사 및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게 된 사실,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4. 9.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그러나 위 매매계약이 있는 후 약 7개월 후인 2019. 11. 15.에야 비로소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, 이 법원의 이 사건 E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적어도 2019. 9. 2. 전까지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,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.

따라서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전선주

